

---

## Trade Initiation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본 약관에서 "약정서", "조항", "부록", "별첨" 및 "참조가이드"란 각 db-direct Internet 서비스 약정서, 당해 약정서의 조항, 부록, 고객실행정보서식의 별첨 및 db-direct Internet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기술, 절차 및 조직상의 규칙을 명시한 참조가이드로서 약정서에 정의된 참조가이드를 의미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정서 및 도이치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른다.

### 1. 해석 및 정의

#### 1.1

##### Trade Initiation 정보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가 Trade Initiation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에 제공한 모든 정보(서식 및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

도이치은행이 본 약관 및 약정서(참조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무역 관련 거래지시로 고객실행정보서식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 Trade Initiation 서비스

도이치은행이 '고객' 및 '고객계열사'에게 본 약관 및 약정서(참조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실행정보서식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 Trade Initiation 사용자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1에 명시된 자로서, '고객'(고객이 각 고객계열사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부터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의 Trade Initiation 서비스 접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도이치은행이 Trade Initiation 서비스의 사용자로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 Trade Initiation 사용자 권한

각 Trade Initiation 사용자가 (i) 다른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에게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와 관련된 상태 변경을 이메일로 통지하고, (ii)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승인하기

**부록: Trade Initiation (Trans@ct)**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참조가이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2 본 약관에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약정서, 참조가이드 또는 고객실행정보서식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1.3 Trade Initiation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은 약정서(참조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내용을 보충한다. 본 약관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본 약관에도 불구하고 약정서(참조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약정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의 조항들이 우선한다.

**2. Trade Initiation 서비스의 범위**

2.1 '고객'과 '고객계열사'는 참조가이드에 따라 (i) 참조가이드에 규정된 각 무역거래 유형 중 특정 무역거래에 대한 거래지시를 도이치은행에 승인 및 전송할 수 있고, (ii) 다른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에게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의 상태 변경을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이치은행은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들'에게 약정서 제6조에 따라 Trade Initiatio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2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이치은행이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들'에게 제공하는 Trade Initiation 서비스는, 도이치은행이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을 '서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은 (i) 도이치은행에 여러 유형의 '거래서비스'에 관한 특정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승인 및 전송할 수 있고, (ii)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1 및 1.3.2와 참조가이드에 보다 상세히 기재된 바에 따라 다른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에게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 상태 변경에 관해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2.3 '고객'은 '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하는 각 '수권자(Authorized Person,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를 대신하여 거래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1에 명시된 각 사용자를 의미)'에 대해,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2. 및 1.3.3에, 각 '수권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수권자'와 함께 승인할 수 있는 '메시지'(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가 포함된 것을 말함)상 단일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별 최대금액(한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한도는 단일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가 신용장,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발행·변경발행 또는 기타 다른 모든 유형의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의 발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단일 Trade Initiation에

## 부록: Trade Initiation (Trans@ct)

적용된다. 각 한도는,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2 및 1.3.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약관에 따라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가 도이치은행에 전송된 각 일자에 적용되는 기준 통화로 표시되며, 이를 위하여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된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의 금액은, 별첨 1.3.2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이치은행이 해당 일자 직전 영업일에 확정된 'DB 기준금리'에 따라, 기준 통화로 환산하여 해당 일자에 계산된다.

Trade Initiation 사용자가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 또는 복수의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들을 준비하면, 그 후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들)는 '수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메시지(하나 또는 복수의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로 구성되거나 이를 참조하는 메시지를 의미함)'는 도이치은행으로 전송될 수 있다.

도이치은행이 Trade Initiation 서비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수령하는 경우, 통상적인 은행업무 관행에 따라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들)를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들)에 명시된 'DB 지점'에 전송하며,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에 "긴급"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만일 특정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에서 'DB 지점'으로의 전송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하고 있고, 지정된 날짜가 '현지 영업일'이 아닌 경우, 도이치은행은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이후 '현지 영업일'에 전송해야 한다. 만일 특정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에서 'DB 지점'으로의 전송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하고 있고, 지정된 날짜가 도이치은행이 '메시지'를 수령하는 날 이후인 경우, 도이치은행은 위 지정된 날짜가 '현지 영업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지정된 날에 전송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가 '현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현지 영업일에 전송해야 한다.

'DB 지점'은 해당 'DB 지점'이 수령한 모든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를 처리함에 있어 '마스터 계좌번호'(Master Account Number)(참조가이드에 정의된 바와 같다)하의 '계좌'들에 적용되는 계약, 해석, 용례, 규정 및/또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서 제13(1)항은 위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참조가이드에 기재된 바와 같이, Trade Initiation 서비스에 의해 Trade Initiation 사용권의 확인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이치은행은 모든 Trade Initiation 사용자로부터 질의, 검색, 수신 또는 배포받은 Trade Initiation 정보의 내용 또는 (i) 해당 Trade Initiation 정보에 포함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관하여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와 제3자 간 계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ii) Trade Initiation 정보에

**부록: Trade Initiation (Trans@ct)**

대하여 질의, 검색, 수신 또는 배포하는 자가 실제 Trade Initiation 사용자였는지 여부, (iii) Trade Initiation 사용자가 '고객' 또는 '고객계열사'로부터 Trade Initiation 사용권 및/또는 Trade Initiation 사용자 프로필을 적절히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도이치은행이 관리하는 모든 Trade Initiation 정보는 도이치은행의 권고 또는 승인의 의사표시(예를 들어 지급지시, 지급요청, 알림, 입금통지 또는 기타 법적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포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나타내지도 않는다. '고객' 및 모든 '고객계열사'는 Trade Initiation 서비스 사용 시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 생성에 사용될 Trade Initiation 정보를 선택하고, 해당 Trade Initiation 정보의 내용이 예정된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의 용도에 비추어 최신성, 완전성, 정합성, 및 적절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객' 및 모든 '고객계열사'는 도이치은행이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지급보증서, 신용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서의 기재 내용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한다.

### 3. Trade Initiation 사용자 및 Trade Initiation 사용권; 보안조치

3.1 고객실행정보서식 별첨 1.3.1 및 1.3.2에 기재된 Trade Initiation 사용자는, 약정서의 참조가이드 및 고객실행정보서식에 따른 Trade Initiation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용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들에 대한 '비밀번호'의 발급, '비밀번호'의 안전한 처리 및 저장과 '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참조가이드의 모든 조항들은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과 Trade Initiation 사용권에 각각 준용된다.

3.2 Trade Initiation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 및 각 '고객계열사'는 약정서(참조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보안기준을 확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내부보안기준을 Trade Initiation 사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3 도이치은행은 이메일을 통해 Trade Initiation 서비스의 일환으로 배포되는 Trade Initiation 정보의 누설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전달 내지 기타 통신서비스를 통한 통신 과정에서 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도이치은행은 당해 정보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한다.

## 4. 개별 선택권

**부록: Trade Initiation (Trans@ct)**

---

각 'DB 지점'으로 전송된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해당 'DB지점'은 해당 Trade initiation 거래지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지시의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